

의안번호	제 13 호	의결사항
의결년월일	1996. 12. . (제 회)	

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 천 시 장
제출년월일	1996. 12. 10 .

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73
번호	

제출일자 : 1996. 12. 10 .

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수돗물 낭비의 최소화를 위한 절수유도형 요금체계로 전환,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급수계량기 교체비의 읍·면·동 동일산정등 상수도 재정의 경영 합리화를 기하여 맑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시설분담금, 읍·면지역을 동지역과 동일 산정(안 별표1)
- 업종별 요율 상향 조정(안 별표2)
- 업종구분표 현 실태에 맞게 개정(안 별표3)
- 급수장치 손료, 읍·면지역을 동지역과 동일 산정(안 별표4)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 · [별표2] · [별표3] 및 [별표4]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7. 1.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.

[별표1]

시 설 분 담 금

계량기 구경별	분 담 금 액(원)		비 고
	동 지 역	읍·면 지 역	
13m/m	168,000	168,000	
20m/m	455,000	455,000	
25m/m	808,000	808,000	
40m/m	1,642,000	1,642,000	
50m/m	3,010,000	3,010,000	
75m/m	5,472,000	5,472,000	
100m/m	12,312,000	12,312,000	
150m/m	24,624,000	24,624,000	
200m/m	38,376,000	38,376,000	

[별표2]

업종별요율표

구분 업종	사용단계별 (㎡)	요금(원)	
		등	읍·면
가정용	0~10	2,200	1,590
	11~20	290	220
	21~30	320	250
	31~40	360	280
	41~50	400	310
	51 이상	450	350
업무용	0~20	8,400	5,600
	21~50	600	480
	51~100	700	560
	101~300	790	630
	301 이상	900	720
영업용	0~30	14,700	13,890
	31~50	620	620
	51~100	720	720
	101 이상	840	840
옥탕용 1종	0~200	92,000	92,000
	201~300	530	470
	301~500	590	580
	501 이상	710	710
옥탕용 2종	0~200	124,800	124,800
	201~500	800	800
	501~1000	940	940
	1001 이상	1,150	1,150
전공업용	기본(계약량)	110	110
	초과	150	150

[별표3]

업종구분표

업종	구분내용
가정용	- 가시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정용 급수 단,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을 적용 - 담배·연탄·양곡·문방구·지물·철물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·인장업·행정서사업·수예점·만화가게·구멍가게등으로서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- 교아원·영아원·양로원·탁아소·모자보호·노인요양·정신질환자 요양시설
업무용	-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- 시설소화전 - 관공서·병영·학교·유치원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%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(생산, 제조용수 제외) - 종교단체·방송국·신문사·정당·국가·유공단체·사회단체(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)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·중앙회 및 지사무소·사회복지시설
영업용	- 식품점영업(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·유흥점영업·파자영업점·다방·휴게실등)·공연장(극장포함)·숙박업(여인숙제외)·사설도축장·유기장·노래방·백화점·도매센타·대규모소매점·자동차정비업·주차장·세차장·주유소·운송 또는 관광업·예식장·사설학원·사진현상소·양조업·주조업(주정포함)·의약품·화공약품·화장품제조업·금은방·제빙·냉동냉장업·청량음료제조업(유산균음료 포함)·병원(의원제외)·은행(보험회사, 시설금융 조합) - 체육시설업(체육도장, 탁구장 제외) -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: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최종단계 요율 적용) -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·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(최종단계 요율 적용) - 제혁업·염색업·도금업·요업·페인트류제조업·석재가공업·식품가공업
욕탕1종	일반목욕장업
욕탕2종	- 특수목욕장업(공중위생법에 의한 사우나탕, 복합목욕장업) - 실질적인 특수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안마시술소(발한실을 포함한 욕실면적이 보사부 규정상 시설기준(90㎡)을 초과하거나 욕실 및 발한실, 시술실, 탈의실외에 별개의 휴식장을 갖춘 안마시술소)
전공업용	공업단지등 일단의 공업전용지역에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한 급수

[별표4]

급 수 장 치 손 료

(단위 : 원)

계량기 구경별	동 지 역	읍·면 지 역	비 고
13m/m	360	360	
20m/m	490	490	
25m/m	560	560	
40m/m	1,090	1,090	
50m/m	2,010	2,010	
75m/m	4,560	4,560	
100m/m	6,190	6,190	
150m/m	10,430	10,430	
200m/m	19,380	19,380	